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발 의 자 : 이범윤 의원외 7인

□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07년 12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4일

□ 제안 이유

○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(안 제2조)

나. 참전유공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(안 제5조)

□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써
-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